

의안번호	2216998
의 퇴 인	정일영 의원
회 답 일	2026. 3. 12.
추계번호	26F103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처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 및 과태료 수준 조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제2항(벌칙) 단서 삭제 및 안 제46조제1항제3호 신설	○ 벌금이 부과되던 법 위반사항을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전환하고, 과태료 액수의 상한을 벌금의 상한보다 상향함 - (현행)3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안 제44조제2항(벌칙) 단서 삭제 및 안 제46조제1항제4호 신설	○ 벌금이 부과되던 법 위반사항을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전환하고, 과태료 액수의 상한을 벌금의 상한보다 상향함 - (현행)3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안 제44조제3항(벌칙) 삭제 및 안 제46조(과태료)제1항제5호 신설	○ 벌금이 부과되던 법 위반사항을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전환하고, 과태료 액수의 상한을 벌금의 상한보다 상향함 - (현행)3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안 제46조(과태료) 제2항	○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하향함 -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정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제2항(벌칙) 단서 삭제 및 안 제46조제1항제3호 신설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안 제44조제2항(벌칙) 단서 삭제 및 안 제46조제1항제4호 신설	
3	안 제44조제3항(벌칙) 삭제 및 안 제46조(과태료)제1항제5호 신설	
4	안 제46조(과태료) 제2항	

2. 상세 사유

(1) 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및 안 제46조제1항제3호 신설

- 개정안 제44조제2항 단서¹⁾를 삭제하고 제46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은, 과실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4조제2항²⁾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³⁾을 위반하여 용도세를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내용임
 - (현행)3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액수의 상한을 벌금의 상한보다 상향하는 경우 재정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실적이 없어 세외수입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세를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협정관세)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3)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2) 안 제44조제2항 단서 삭제 및 안 제46조제1항제4호 신설

- 개정안 제4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및 제4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은, 과실로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30조제3항⁵⁾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⁶⁾을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제46조제2항제4호⁷⁾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내용임
 - (현행)3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액수의 상한을 벌금의 상한보다 상향하는 경우 재정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실적이 없어 세외수입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0조(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제)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안 제44조제3항 삭제 및 안 제46조제1항제5호 신설

□ 개정안 제44조제3항⁸⁾을 삭제하고 안 제46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내용은,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제14조제1항⁹⁾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제외)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전환하는 내용임

○ (현행)300만원 이하의 벌금→(개정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액수의 상한을 벌금의 상한보다 상향하는 경우 재정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5년(2021~2025년)간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된 실적을 살펴보면 벌금 부과 1건당 평균 벌금액은 176.2만원 수준이며, 연평균 부과된 벌금액은 564.0만원 수준으로,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세외수입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표 1] 최근 5년간 법 제44조제3항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실적

(단위: 건, 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2021~2025년)
건수	3	4	3	1	5	3.2
벌금액 합계	2,693,580	3,391,460	15,801,560	1,620,000	4,693,930	5,640,106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③ 과실로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안 제46조제2항

□ 개정안은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46조제2항¹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임

-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현행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과태료 제외수입이

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관세법」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3개년(2022~2025년) 법 제46조제2항각호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 및 징수된 실적은 없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세외수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김주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주현	02-6788-4836	kjh@assembly.go.kr